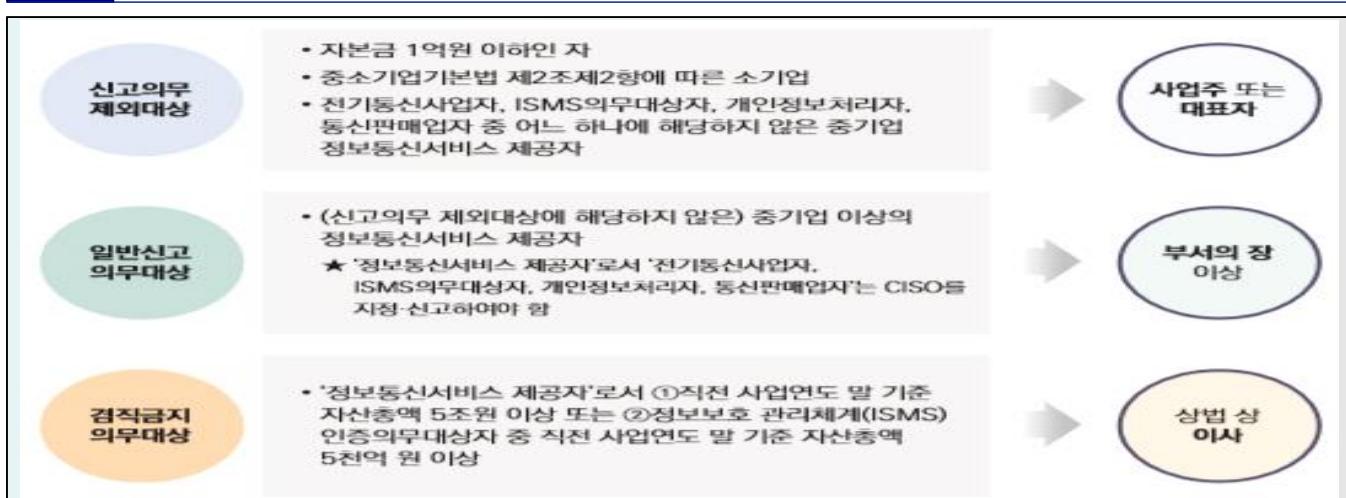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 신고 제도 안내

## 1.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 신고제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정보통신망법」 제45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1항)
    -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5. 신고의무 제외 대상' 참조)의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1항), 이 경우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인정함.(「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36조의7제3항)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함)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
-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는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로,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4항 각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 및 책임, 정보보호 업무관련 예산, 인사에 대한 직접적 권한을 가짐(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신고제도 안내서('24.9))

## 2. CISO 지정 · 신고 대상자 구분



## 3. CISO의 일반 자격 요건-1. 직위 기준

- 신고의무 제외 대상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경직금지 대상 ⇒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일반신고 의무대상 ⇒ 사업주 또는 대표자, 이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 4. CISO의 일반 자격 요건-2. 학위 · 경력 기준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학위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 국내외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 국내외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 동일 분야의 업무 3년 이상 경력
    - 국내외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 동일 분야의 업무 5년 이상 경력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 10년 이상 경력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
    -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위 및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정보보호최고 책임자의 자격' 등을 따름(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36조의7제4항 · 제6항)
-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 학력"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말한다.
- 가. 전자 관련 학과: 전기전자, 전기전자정보, 전기전자제어, 전자, 전자계산, 전자전기정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자재료, 전자컴퓨터,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정보전자,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제어계측, 컴퓨터과학
  - 나. 정보통신 관련 학과: 통신, 국제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자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파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기통신설비,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파, 전기전자전파, 방송설비, 통신컴퓨터,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정보기술
  - 다. 정보보호 또는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 전산, 전산통계, 정보전산, 정보처리, 시스템, 정보시스템, 구조시스템,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 정보통신, 정보보호 또는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로 인정받은 학과
- ❖ "정보보호 분야 업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의 계획 · 분석 · 설계 · 개발 · 운영 · 유지보수 · 컨설팅 · 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말한다.
- 가.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분야 암호 기술, 인증 기술 등
  - 나. 시스템 · 네트워크 보호 분야 시스템 보호, 해킹 · 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
  - 다. 응용서비스 보호 분야 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
- ❖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의 계획 · 분석 · 설계 · 개발 · 운영 · 유지보수 · 컨설팅 · 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말한다.
- 가.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방송서비스 등
  - 나. 정보통신기기 분야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
  - 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 범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특정 업무용 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 구축 · 운영 · 활용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 5. 신고의무 제외 대상 ⇒ 사업주 또는 대표자로 지정

-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신고를 해야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의 '(소기업)' 확인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의무 대상자

-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IPA사업자)
- ②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사업자)
- ③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 직전 연도 12월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1)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2)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 6. 겸직금지 대상 ⇒ 상법상 이사 또는 집행임원으로 지정

[대상]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격요건]

- 일반 학위 · 경력 자격요건에
- 다음의 특별 경력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
  -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근해야 함

## 7. CISO의 업무

○ 총괄 업무

-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 시행 및 개선
-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겸할 수 있는 업무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정보통신망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8. 위반시 처벌 규정(과태료 부과)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정보통신망법」 제76조)

< 최근 3년이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법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36조의7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않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 제6의2호	750 만원	1,500 만원	3,000 만원
법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 제6의3호	1,000 만원	2,000 만원	3,000 만원

## 9. 신고방법 및 절차 : 관할 지역 전파관리소에 온·오프라인 접수

-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전자문서를 통한 제출 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확인에 동의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CISO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전자민원센터(전자민원발급)에서 신고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변경·폐지 신고는 지정신고를 추가로 진행하거나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폐지사유 등 기재한 공문 관할 지역별 전파관리소로 오프라인 제출

### ☞ 지정신고서 제출방법

- 온라인(인터넷)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http://www.emsit.go.kr)) 또는 정부24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전자민원신청/민원신청 → 민원사무(정보보호최고책임자(CSO) 지정신고)선택/온라인 민원신청 → 신청인 정보입력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민원신청 완료 → 대표자 또는 기업 인증서로 신청

- 오프라인(FAX, (전자)우편 등) : 관할 지역별 전파관리소

구분	전화번호	FAX	주소	비고
중앙	02-3400-2344	02-3400-2329	(05830)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34	해외기업
서울	<b>02-2680-1749 02-2680-1756</b>	<b>02-2680-1758</b>	<b>(08249) 서울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hyokim601@korea.kr, hyk1116@korea.kr</b>	<b>서울·인천·경기</b>
부산	051-974-5120	051-974-5129	(46703)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부산·경남
광주	061-330-6820	061-330-6829	(58214)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남
강릉	033-660-2815	033-660-2819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강원
대전	042-520-4136	042-520-4190	(35283) 대전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세종·충남
대구	053-749-2818	053-749-2929	(42043) 대구 수성구 동원로 90	대구·경북
전주	063-260-0102	063-260-0111	(55316)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전북
제주	064-740-2816	064-740-2820	(63037) 제주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
청주	043-261-5854	043-261-5858	(28567)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길 30	충북
울산	052-231-8884	052-231-8887	(45013)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

## 10. 기타 참고사항

- \* CISO 집중 신고 기간(계도기간) 내 업무처리 지역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고를 권장**드리며, **오프라인 신고시 접수 확인 전화**, 타 민원 전화응대·출장·유연근무 등 사유로 담당자와의 전화연결 및 응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며 연락처 등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http://www.emsit.go.kr)) → 전자민원신청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안내서」와 ②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www.crms.go.kr](http://www.crms.go.kr)) → 업무안내 → 방송통신사업등록관리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신고의 「온라인 접수 방법」 및 민원 → 「FAQ」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전자민원발급	전자민원안내	이용안내
<b>전자민원신청</b> <small>Civil Service Request</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민원신청</b></li> <li><b>생애주기별 민원검색</b></li> <li><b>분류별 민원검색</b></li> <li><b>자주 찾는 민원</b></li> <li><b>민원신청양식 자료실</b></li> <li><b>주소 검색</b></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나의메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이동</b></li> <li>나의 민원서비스</li> <li><b>이동</b></li> </ul>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5px; font-weight: bold;">민원신청</div> <div style="font-size: small; color: gray; margin-top: -5px;">온라인신청서는 이제 그만!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bottom: 5px;"> <span style="color: #0070C0;">★</span> &gt; 전자민원신청 &gt; 민원신청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9f9f9; margin-top: 10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span> <span>신청안내</span> </div> <div style="margin-top: 10px;">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민원내부</a>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소관부서</a>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민원유형</a>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신청인구분</a> </div> <div style="margin-top: 10px;">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접수처리</a>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처리결과안내</a>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구비서류제출안내</a> </div> <div style="margin-top: 10px;">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온라인민원신청</a> </div> <div style="margin-top: 10px;">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접수처리</a>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접수처리기간</a>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접수처리기간</a> </div> <div style="margin-top: 10px;">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처리결과안내</a>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구비서류제출안내</a> </div> <div style="margin-top: 10px;">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온라인민원신청</a> </div> </div>				
	화면코드 D276 <input type="text"/> <span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 5px;">GO</span>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a>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증정 전파 관리 소</a>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증정 전파 관리 소</a>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견적처리기간]</a>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접수: 0일)</a>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처리: 30일)</a>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총 30일)</a>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증정전파관리소 바로가기</a> ( <a href="http://www.crms.go.kr">www.crms.go.kr</a> )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수수료</a>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수수료 없음</a>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구비서류</a>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증정 민원 제출서류]</a>				
	<span style="color: #0070C0;">●</span> <a href="#">[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제도 안내서]</a>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관련 FAQ>

Q.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 신고 대상이 맞는지?

A. 전기통신사업자와 홈페이지 운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정 · 신고 대상입니다.

Q. 중기업이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정보보호 필요성 조건\*에 해당하는 중기업과 대기업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억원 이하, 소기업, 정보보호 필요성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기업은 신고 의무 제외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지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 필요성 조건 :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의무 대상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

Q. 반드시 임원급으로 지정해야 하나요?

A.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임원과 직원을 포함한 임직원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21년12월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중이며, 신고의무 제외 대상 업체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등 겸직금지 대상 업체는 상법상 이사(집행임원 포함)인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그 외 업체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상법상 이사(집행임원 포함),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상무, 이사 등의 임원이 아닌 부장, 차장 직급이어도 대표 이사에게 정보보호 업무에 관해 직접 보고가 가능한 위치라면 지정 가능)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Q. 자격요건의 학력이나 경력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A. CISO는 일반 자격요건(직위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신고의무 제외대상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 지정되어야 하는 바 일반 자격요건(학위 · 경력 기준)을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신고 의무대상은 1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로 지정하거나 일반 자격요건(학위 · 경력 기준)을 갖춘 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겸직금지 대상의 경우는 일반 자격요건(학위 · 경력 기준)과 특별 자격요건(경력기준 + 상근)을 갖춘 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CISO의 일반 자격 요건(학위 · 경력기준)은 6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Q. 지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법인공인인증서 또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공인인증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http://www.emsit.go.kr))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서식에 따라 작성(지정신고서 첨부 불필요)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별 전파관리소에 팩스 또는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을 첨부하여야 하나, 온라인 신고양식 또는 지정신고서 하단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동의 서명 시 제출 불필요

Q.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변경신고는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변경된 내용(업체명, CISO 등)으로 추가 지정신고를 하시면 되고, 업체의 폐업, 인수합병 등에 따른 폐지신고는 업체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폐지사유 등을 기재한 공문을 관할 지역별 전파관리소에 팩스 또는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

Q. 신고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10일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http://www.emsit.go.kr))→나의민원 →민원신청내역 또는 전자민원발급→발급민원에서 신고확인서 온라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10일 경과 시 전자민원신청→민원신청→통신사업 재발급 검색 및 신청→신청인 정보 입력→신청서 작성→재발행대장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선택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공인인증서 또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공인인증서 필요

Q.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또는 제도의 취지가 뭔가요?

A.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 신고제도는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CISO 지정은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기업의 최소한의 의무이며,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투자확대, 보안수준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신고된 기업의 CISO에게 정보보호 동향, 정보보호 관련 세미나 등 무료교육, 긴급 보안공지 등 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이메일 · 문자 등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6. 13.>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직책/직급	겸직 여부	<input type="checkbox"/> 전담	<input type="checkbox"/> 겸직 (겸직업무: )
	관련 업무경력	정보보호: 년 개월	정보기술: 년 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